



# 반려동물 보유세 실행에 선행되어야 할 점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국책연구원을 설립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안,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동물 보유세의 사회적 정착과 성숙한 생명 사회를 위해서라도 조만간 필요하다.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hjwoo@snu.ac.kr

# 반려동물 보유세는 엄청난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

반려동물이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등 사람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산업육성과 동물복지가 함께 발전하여 사람과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이기재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kpira@daum.net

## I. 들어가며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6개 분야로 이루어진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는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으로서 이 6대 분야의 목표를 위해 26개 과제를 언급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분야 중의 한 과제인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을 위한 항목으로서, 다시 말하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비록 정부는 선진국처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거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기에 많은 이들의 첫 반응은 부정적인 쪽이 우세한 듯하다. 부정적인 이들은 앞으로 동물 키우는 비용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동물 사육 문제에 관심을 지녀온 동물단체 중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국내 법령 간의 불일치마저 방치된 상황에서 반려동물 관련 세금을 새로이 부과하겠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표시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추가 세금을 언급한 한 정부 발표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는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찬반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와 실행이 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안에서 동물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개선과 협력 방식에 대한 계획과 함께 제시되었음은 긍정적이지만,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 수준으로 반려동물보유세의 취지를 말하는 것은 진정한 반려동물 보유세 의미를

## I.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1월 동물복지5개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그동안 동물보호, 복지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중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22) 하겠다는 발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기고문에서는 왜 반대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우리나라 펫산업 현황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가구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미국(70%), 영국(68%)등 선진국에 비해 1/3 수준이다. 반려동물관련업체로는 애완용품샵 2017년 기준 6,739개소, 동물병원은 3,962개소,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생산업체는 약 2,000개로 나타나 있고, 2019년 펫산업 연관규모는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

### 2. 2016년 반려동물산업육성법

동물보호단체반대로 무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면서 그 토대 위에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016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육 가구 증가와 동물병원·미용·사료·용품 등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제, 동물 관련 영업 등록(신고) 제도 등을

1) 현 정권 초기에 헌법 개정 논의에서 '동물 보호'라는 표현이 충분하지는 않아도 제안된 것은 고무적이었다.

제한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

한편,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명칭에 대하여 재고는 필요하다. 비록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이고, 주인 소유물에 불과하지만, 동물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즉, 동물은 단지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최소한 물건과는 다른 제3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힘쓸 필요는 언제나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더 나아가 1976년 동물유기죄를 제정해 '동물은 감각 있는 존재'라고 명시했다.<sup>1)</sup> 현재 국내법에 맞게 제시된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표현은 향후 '반려동물 양육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 II. 반려동물 보유세

### 1. 취지

생명체인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서 키우는 것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과 의지에 대한 표현이 된다.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키우는 동안에 지원되는 지자체나 국가의 지원 비용을 키우는 이들도 동참한다는 취지가 있다.

### 2. 실행에 선행되어야 할 것들

반려동물 보유세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집행되는 세법이라면 실무상의 구체적 지침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관련된 국내 상황과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제도나 문화에 있어서 반려동물 보유세 실행이 그 취지를 살리는 맥락에서라도 세금을 내는 분들이 받게 될 혜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제도화할 것인가로 요약될

1)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2) 출처: 정부, 동물 간호사 제도 등 도입...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법 개정 추진(박성자·레이나·Reina)

마련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보호소 건립을 지원하고, 동물보호문화축제 등 다양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제도 정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2016년 수립하였다. 농식품부 내 "(가칭)동물복지팀 신설('17년 1분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전담법률을 마련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까지 준비한다고" 하였다.<sup>1)</sup>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관한 법은 '동물보호법' 뿐이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소, 돼지 등 가축과 실험동물도 포괄하는 데다 동물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로 만들어져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 '애견 유치원' '애견 초상화' '애견 심리 상담' 등 관련 서비스가 속속 생기는데도 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생산(번식), 판매, 수입, 장묘 등 네 가지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16 10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반려동물관련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sup>2)</sup>

### 3. 동물보호단체 극렬한 반대

위에서 인용한 농식품부의 야심찬 계획에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해 동물을 수익창출의 도구로 삼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말하는 창조경제냐?"**

**"정부는 신산업 육성이란 미명하에 동물을 도구화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은 오로지 생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동물 잔혹사는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진행되기 위해 선행되어 정리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1) 먼저 현재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이 필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제의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하고, 세금은 이에 대한 지원에 활용되어 보다 책임있고 성숙한 동물 양육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내의 등록제는 3개월 이상인 개<sup>2</sup>를 대상으로 하는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을 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반려견 동물등록제의 시행이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된 후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등록했다’는 응답이 50.2%였다. 2018년 반려동물 635만 마리로 추정되나 지자체 등록은 130만마리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반려동물의 등록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전제되어야 한다.

2) 반려동물 범위에 대한 법령 정비 및 세분화 역시 정리되어야 한다.

세금 부과 대상 반려동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개와 같이 매우 다양한 품종이 있는 경우, 맹도견 등 도우미 동물의 경우 등 어떻게 차등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가 등의 논의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유기동물 입양의 경우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상업적으로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세금이 높아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동물이 생명체로 존중되는 선진국의 반려동물 보유세 세법을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관련 법령 자체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중에서도 특히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극렬한 반대로 동 계획은 슬그머니 없어졌다. 그 후 생산농가의 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3,000여 개 생산 농가가 708개로 77%가 폐업하였으며, 2019년에는 농가의 관리자수를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 하였으며, 개의 임신 휴지기를 8개월에서 10개월로(개의 발정주기는 8개월임) 상향,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무교육실시, 가정견 분양 연 15만 원 이하 제한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우리나라가 만들어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동물보호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 II.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이유

반려동물 보유세는 세계 극소수(독일, 네덜란드)

나라의 일부 주가 시행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도 독일 연 9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도 연간 20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세금을 내라는 것은 반려동물 인구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하여 성장하고 있는 펫산업을 쇠락의 길로 이끌 것이며 실효성 없이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동물보유세를 부과하려는 이유가 유기견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2019년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가 3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산업에서는 이미 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다. 그 밖에도 동물 판매업 면허세, 동물미용업 면허세, 동물 위탁관리업 면허세, 동물 운송업 면허세 등 각종 면허세 등에 엄청난 세금을 이미 내고 있다. 이 세금으로 일 년에 약 200억 정도 드는 유기견 관리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되어 있지만, 소득 3만 불을 넘은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 할 때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는 매우 많다. 국내법의 개선이라면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에 대한 식용 문화와 관련 법령도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개 식용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하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현행법이 있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개는 가축인데 가축을 도축, 유통해 먹는 것을 규정해 놓은 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가 빠져 있다. 적당히 도살해 유통하고 먹어도 되게끔 법이 되어 있는 셈이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이 절실하다.

### 3) 동물의료 보험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여전히 동물 질병 발생의 통계는 물론 예산 추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는 동물 병원에서 다루는 각종 동물 질병에

대한 질병 코드 통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다. 동일한 질병에 부과되는 일련의 코드가 정비되어 동물의료 보험제도가 마련되고,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 이들이 의료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보험제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입자가 선택하게 하려면 현재 동물이 물건으로만 되어 있어 관련 보험은 손해보험사만이 다룰 수 있는데 향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여 생명보험사도 보험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4) 다양한 납세자 혜택 마련이 준비되어야 한다.

동물 의료 보험에서의 혜택을 기본으로 각종 동물 관련 시설 및 행사 할인은 물론 해외 사례처럼 연말 공제 대상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낸 보유세보다 실질적으로 더욱 혜택이 있는 형태로 해서 더욱 건강하고 책임 있는 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축산부 동물복지팀 공무원들이 예산당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다.

동물 보유세는 비용적, 형평성 측면에서 이치에도 맞지 않고 대다수 잘 기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제도적 부담만 가중시켜서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는 반려인이 늘어날 것이고, 엄청난 유기동물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금을 내면서까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펫 케어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유기동물을 입양시키는 분들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낸다고 소유자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유기동물이 감소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선에서 일해 보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렵게 생활하면서 외로워서 가족처럼 의지하고

기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의 동물 사랑과 책임의식은 누구보다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신들은 잘 먹지도 못하면서 반려동물을 굶기지 않고 잘 돌보는 분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결국 양육을 포기하여 엄청난 유기동물이 발생할 것이다. 1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많다.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동물등록율이 현재 25%정도에 불과하고, 개는 평균수명이 짧고, 고양이는 보유자의 과실 없이 가출하는 사례가 많다. 가가호호 방문하기 전에는 반려동물 주기적 보유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워 과세 징수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연말 세액 공제와 같이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제도적 장치이기에 연말 공제 대상 항목의 세분화 및 공제 비율 등은 사회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하면 된다.

#### 5) 반려인 사전 교육 제도의 의무화

우리사회 구성원 중에는 동물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 그들의 권리도 존중할 때 자기적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사회적 갈등 없이 보다 빨리 정착하게 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듯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교육 이수증은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으로 제도화시키면 동물을 키우는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 사회적인 책무 인식도 분명해 진다. 이런 문화를 위해서 지자체는 반려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설에 대한 제도 및 위탁 교육 프로그램 인증 등을 정리해야 한다.

### III. 나가면서

반려동물은 생명이다.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제도는 물론 건강한 생명 가치를 사회에 안착시키는 것은 어렵다. 현재 사회가 지닌 생명 가치는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로 목숨을 잃는 상황, 고령화 시대의 노임 고독사, 동물 학대 등의 다양한 형태 속에, 더 나아가 각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 상황은 물론 기후 온난화 진행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접하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 상황의 밑바닥에는 해당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물건인 반려동물이 죽으면 병원에서라면 의료 폐기물이 되지만 대부분은 생활 쓰레기가 되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져야 한다. 가족 구성원으로 생활했지만 장례 치를 곳도 마땅치 않다. 일종의 님비 시설로 동물 장례시설 마련도 어렵고, 동물을 싫어하는 이들도 있는 일반 국민

### III. 정확한 실태조사 및 통계제공 급선무

보유세는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고, 유기동물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정확한 유기견의 숫자, 그 품종이 무엇인지 그 중 반려견이 얼마인지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유기견은 집을 밖에서 집 지키기 위해서 키우는 마당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반려견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마당개 까지 다 포함하여 반려동물이라 생각하고 모든 소유주가 반려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대부분 반려인은 유기동물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아니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대하여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를 축산으로 이해하고 집 밖에서 마당개로 기르는 소유주는 책임 의식이 부족하고 동물을 유기, 유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후자의 경우까지 반려인으로

포함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유기동물 문제의 근원은 제도와 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성에 있다. 동물복지가 잘 되어있다는 독일에서도 연간 9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 IV. 정책제안

1. 대부분의 유기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양육하는 반려견이 아니라, 집을 지키기 위해 집밖에서 키우는 마당개들이다. 따라서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품종에 대한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2. 유기가 원인이라면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세금으로 지원도 종종 반대에 직면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령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고독사라는 사회 문제도 반려동물과 함께 접근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희망하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훈련된 반려동물과 양육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동물 단체와 지역 수의사 협회의 수의사가 각각 매주 방문해 양육을 돕고 관리하는 제도도 생각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4차산업이 거론되면서 자율적 인공지능체에 어디까지 권리를 인정하고 이때 사람의 권리는 어떠한가 등의 논의가 진행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간과 동일한 유기적 생명체인 동물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다. 살아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한 공감과 이에 대한 인식 개선 없이 소위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충실한 논의가 될지 의아하다. 굳이 동물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천만 반려

가족이라 말해지다 보니 관련 산업 규모 조 단위를 넘어섰다. 이런 사회 변화에 관련 법령이나 제도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첫 걸음으로서 반려동물 보유세의 정착은 자연스럽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현재 낙후된 사안들에 대한 선행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제시할 때에 그런 순차적 개선 노력에 대한 로드맵을 같이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 이런 여러 문제를 사회 차원에서 조율하고 개선해 성숙한 생명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총괄할 국가 조직이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방역을 다루는 수의학이 보건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보건 쪽 국책기관은 여럿 있으나, 동물 관련 국책 연구원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동물단체, 동물 산업계, 수의사 집단, 일반 시민 등의 각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은



3. 요즘 자기 부모보다 기르는 반려동물에 더 잘한다는 말이 있듯이, 최고의 동물복지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는 메치 메이커(중계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 보듯이 산업발전과 동물복지는 정비례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펫산업은 반려동물 생산업과 유통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이 다양하다. 사료용품 제조업, 애견미용업, 펫카페업, 동물병원, 펫샵, 애견호텔, 애견훈련소, 애견유치원, 반려동물약품업, 의료기기업, 장례업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펫금융, 가전, 통신, 패션 등으로 산업군이 확장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민간자격증도 200개가 넘었다. 그만큼 반려동물 시장은 고용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

이상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업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 알바를 선호한다고 답한 알바생 중 77.4%는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급여가 다소 낮더라도 반려동물 관련 알바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농식품부는 이 분야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일자리창출에 노력해야 할 때다. 업계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1만 명으로 5년 동안 총 5만 명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걸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시장 규모는 74조, 중국 34조, 일본은 20조이며, 현재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멕시코, 동남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이제 겨우 23.7%로써, 미국의 70% 영국의 68%등, 선진국에 1/3 수준에 불과하다. 갈 길이 아직 멀고 문화와 현실이 다른데,

불가능하고 정부 정책은 동물단체나 시민들에게 수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여러 법령 간의 불일치 조율도 어렵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물 관련 국책연구원(가칭 국립동물복지연구원) 설립은 필수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국책연구원을 설립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안,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동물 보유세의 사회적 정착과 성숙한 생명 사회를 위해서라도 조만간 필요하다.



극소수의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도 더욱 강력한 규제를 만들고 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무 교육과, 가정견 분양 연 15만원 이하 제한까지 실시되면 세계 최강의 규제가 되고 이로 인해 펫산업의 존재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펫산업 종사자의 85%가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소상공인들이다. 대기업이 이미 사료와 용품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여 어려운데 설상가상 도와주어야 할 정부마저 규제를 하게 되니 종사자들은 살아가기가 막막하다. 영세 소상공 업종까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며,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지 고심을 해야 한다. 일부 동물유기라는 문제에 과도하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경제적 효과 그리고 반려동물이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등 사람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려동물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산업육성과 동물복지가 함께 발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